

동물성비료 검역방법 및 기준(제34조 관련)

1.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에서 정한 가금 또는 신선·냉장·냉동 가금육 수입허용국가[국가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HPAI(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)에 청정한 경우]
 - 가. 수입조건: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첨부
 - 나. 검역장소: 보세장치장 또는 검역창고

2.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에서 정한 가금과 신선·냉장·냉동 가금육 수입금지국가(국가가 포함하고 있는 지역 중 HPAI에 비청정한 지역이 있는 경우)
 - 가. 수입조건: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첨부(해당 제품을 70℃에서 최소 30분이상 또는 동등 이상으로 열처리 되었다는 내용 포함)
 - 나. 검역장소: 보세장치장 또는 검역창고
 - 다. 검역방법: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

3. 정밀검사
 - 가. 대상국가: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에서 정한 가금 또는 가금육 수입금지국가(국가가 포함하고 있는 지역 중 HPAI에 비청정한 지역이 있는 경우)
 - 나. 대상제품: 최초수입제품(수출국, 수출업체 및 제품명이 동일한 제품으로 수입자가 이전에 수입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할 경우 제외) 또는 포장지가 훼손된 제품. 단, 수입금지 조치 이후 처음 수입되는 제품은 최초 수입제품으로 본다.
 - 1) 시료채취량: 3개 부위에서 균등하게 채취(시료당 100~200g)
 - 2) 검사의뢰기관: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
 - 3) 검사항목: HPAI검사